

2023년 제8회 전라남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

2023년 제8회 전라남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
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3년 7월 20일
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

| 근무부서 | 임용분야 | 임용직급 | 채용 인원 | 근무기간 | 담당 업무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산림자원 연 구 소 | 수목원정원 가 드 너 |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“마급” (35시간, 9급상당) | 1명 | 임용일 ~ 1년 (기간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명품 공원화 계획 연계 신규 테마 정원 조성관리실외 생활정원 디자인 및 조성관리목재 랜드마크 조형물 디자인 및 조성관리수목유전자원 수집 및 전시 |
| 건강증진과 | 물리치료사 |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“라급” (35시간, 8급상당) | 1명 | 임용일 ~ 1년 (기간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 호흡계, 일상 생활 동작 등을 평가 치료계획 수립환자별 온열치료, 적외선 치료, 전기 치료, 도수치료 등 수행가정환경 개선 등 보호자 교육 및 자가 치료 등에 관한 환자교육치료과정 기록정리 및 의료 장비 등 기타 치료와 관련 장비 관리 |

※ 시간선택제 임용기간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1년 추가 연장 가능

※ 직제·기구가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임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

2. 응시자격

가. 공통사항(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
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 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 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 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 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- 주소지·성별·연령 : 제한 없음 *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
- 국적 : 대한민국(외국인이 아닌자)

나.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

| 임용분야 | 자격요건 |
|--|---|
| 수목원·정원 가드너 <small>(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“마급”)</small> | <p>1.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【경력인정】 국내·외 공공기관, 민간 기업·단체에서 수목(임학, 임산가공, 조경, 원예) 관련 업무 경력</p> <p>【우대요건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 및 민간기업 등에서 관련분야 근무 경력(1년 이상)이 있는 사람 - 관련학과 전공자(임학자, 임산가공학과, 조경학과, 산림자원학과, 원예학과) - 관련분야 자격증(산림·조경·원예분야 기능사 이상)을 소지한 사람 |

| 임용분야 | 자격요건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물리치료사 (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“라급”)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【경력인정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의한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[*]로서 공공기관, 병원, 연구기관, 민간기업 등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<p style="margin-top: 5px;"><small>*필수: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</small></p> |

※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, 학위,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기준으로 판단하며, **‘경력’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(시간선택제는 1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**(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)

※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**우대요건**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,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

3. 근거법령

- 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나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1조의3, 제21조의4
- 다.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
- 라.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4. 보수수준

- 가.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아래 연봉한계액표의 각 임용 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함

나. 연봉한계액(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4조 관련)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상한액 | 하한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“라급” (35시간, 8급 상당) | 49,724 | 35,470 |
|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“마급” (35시간, 9급 상당) | 43,784 | |

※ 연봉 외 급여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※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. 시험방법 및 일정

가. 시험방법

○ 1차 시험: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결정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< 서류전형 심사기준 >

| 평정요소 | 채점기준 |
|-------|---|
| 발전가능성 |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, 성장가능성 등 평가 |
| 업무적합성 | 담당예정업무와 관련 분야 근무경력 적합성과 연관성 평가 |
| 우대사항 | 장기근무 경험자, 관련학위 및 자격증 보유자 등 우대 (분야별 우대요건 참고) |

○ 2차 시험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▶ (평정요소)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·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 - ▶ (평가방식)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 · 응답

-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

※ 불합격기준: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할 때

나. 시험일정

| 시험공고 | 응시원서 접수기간 | 시험구분 | 시험일시 | 합격자발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'23. 7. 20.(목) ~ 7. 31.(월) | '23. 7. 27.(목) ~ 7. 31.(월) | 서류전형 | '23. 8. 7.(월) | '23. 8. 7.(월) |
| | | 면접시험 | '23. 8. 14.(월)~ '23. 8. 16.(수) | '23. 8. 24.(목) |

※ 합격자 발표: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(<http://namdo.jeonnam.go.kr/sihum/>)에 게시

※ 면접시험일 및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6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교부: 별지1~9호(내려받아 사용)

나. 접수처: 전라남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(행정동 8층)

다. 접수방법: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

※ 코로나-19 예방을 위해 도청 출입이 제한되오니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

- 우)58564,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(전라남도청) 총무과 인재채용팀
- 봉투 곁표지에 “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증” 글자 표기

○ 우편 접수자의 경우,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, “응시표”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
○ 우편접수 시, 응시수수료(우체국 통상환증서)는 제출서류와 동봉

※ 응시원서는 가급적 빨리 제출하시기 바람. 서류합격 시 면접은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되므로 접수가 늦은 응시자는 장시간 대기 예상.

7. 응시자 제출서류

-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(별지 제1호 서식) 1부
- ② 응시원서(별지 제2호 서식) 1부
 - 증명사진(최근 6개월 이내 / 3.5cm×4.5cm) 1매
 - 응시수수료 : (5급, 시간선택제“가급”) 1만원, (6급, 7급, 연구사, 시간선택제 “나급”, “다급”) 7천원, (8급, 9급, 시간선택제 “라급”, “마급”) 5천원
- ※ 응시수수료는 **전라남도 수입증지**(전남도청 1층 농협에서 판매), 우편 접수시는 **우편통상환**(우체국에서 판매)으로 대체 ※ **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불가**
- ③ 이력서(별지 제3호 서식) 1부
 -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
 -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
- ④ 자기소개서(별지 제4호 서식) 1부
- ⑤ 직무수행계획서(별지 제5호 서식) 1부
- ⑥ 최종학교 학위증서(또는 졸업증명서) 1부 ※ 해외 학위는 반드시 **한글번역문** 공증 첨부
 - 박사학위의 경우, 석·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
 - 석사학위의 경우,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
- ⑦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 - 경력(재직)증명서는 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책, **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**하고,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(날인),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
※ 경력(재직)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반드시 기재 확인 후 제출(매우 중요)
 - 제출된 경력(재직)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 전형 시 **불이익**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(재직)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
- ※ 경력(재직)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“**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 제6호 서식)**” 추가 제출
- 비상근 근무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(週)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서 제출(프리랜서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)

⑧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

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(필수)

-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종

②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-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, 국세청의 ‘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’ 추가 제출

⑨ 주민등록표 초본 1부(병역사항 포함 발행)

⑩ 자격(면허)증 등 1부(해당자에 한함)

⑪ 학위 · 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증빙서류(별지 제7호 서식) 1부(해당자에 한함)

⑫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 제8호 서식) 1부

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별지 제9호 서식) 1부

《응시자 유의사항》

- ①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
- ②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③ **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(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)을 인정하며,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)내의 서류여야 함**
- ④ **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**
- ⑤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8. 기타 사항

가. 전라남도인사위원회 및 전라남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 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
- 나.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,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 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이내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합니다.
- 라.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서류에 기재된 내용(학력, 경력 등)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마.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바.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(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원서 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한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.

※ 상기 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응시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

- 사.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아.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평정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자. 보수와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.
- 차.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합니다.

카.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
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타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▶ 채용절차 관련 문의: 전라남도 총무과 인재채용팀(☎ 061-286-3372)

▶ 담당직무 관련 문의

| 임 용 분 야 | 담 당 부 서 | 연 락 처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
| 수목원·정원 가드너 | 산림자원연구소 | 061-338-4232 |
| 물리치료사 | 건강증진과 | 061-286-6022 |

불임2**직무기술서**

| 임용분야 | 임용예정 직급 | 선발예정인원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수목원·정원 가드너 |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"마급" | 1명 |

| 임용예정기관명 | 근무예정부서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전라남도 | 전남산림자원연구소(전남 나주시 소재) |

| | |
|------|---|
| 주요업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소 전시·정원 디자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명품 공원화 계획 연계 신규 테마정원 조성·관리 · 실외 생활정원 디자인 및 조성·관리 · 목재 랜드마크 조형물 디자인 및 조성·관리 · 수목유전자원 수집 및 전시 · 산림생명자원 데이터 작성 및 이력관리 |
|------|---|

| | |
|------|--|
| 필요역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, 공직문화 감수성(적응력, 소속감) ○ (직급별 역량) 상황인식/판단력, 기획력·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·조정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 |
|------|--|

| | |
|------|---|
| 필요지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학(산림자원), 임산공학, 조경학, 원예학에 관련 분야 지식 ○ 연구소 전문소원 관리, 홍보, 운영 등에 관한 업무 지식 |
|------|---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응 시 자 격 요 건 | 관련분야 : 수목원·정원 가드너 | |
| | 경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▶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·외 공공기관, 민간 기업·단체에서 수목(임학, 임산가공, 조경, 원예) 관련 업무 경력 |
| 우대요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 및 민간기업 등에서 관련분야 근무 경력(1년 이상)이 있는 사람 ○ 관련학과 전공자(임학자, 임산가공학과, 조경학과, 산림자원학과, 원예학과) ○ 관련분야 자격증(산림·조경·원예분야 기능사 이상)을 소지한 사람 | |

불임2**직무기술서**

| 임용분야 | 임용예정직급(직류) | 선발예정인원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
| 물리치료사 |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“라급” | 1명 |

| 임용예정기관명 | 근무예정부서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전라남도 | 건강증진과(병원선 전남511호) |

| | |
|------|--|
| 주요업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병원선 물리치료사 분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 호흡계, 일상생활 동작 등을 평가 치료계획 수립 - 환자별 온열치료, 적외선 치료, 전기 치료, 도수치료 등 수행 - 가정환경 개선 등 보호자 교육 및 자가 치료 등에 관한 환자교육 - 치료과정 기록정리 및 의료 장비 등 기타 치료와 관련 장비 관리 <p>* 병원선 특성 : 일주 단위로 순회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넓은 진료권역(여수→완도)으로 선적항(여수)이 아닌 타지역항(완도, 녹동 등)에서 정박하는 경우가 있음</p>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 ○ (직급별 역량) 상황인식/판단력, 기획력·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·조정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 |

| | |
|------|--|
| 필요지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물리치료 기초, 물리치료 진단평가, 물리치료 중재, 의료법규 등 기본지식 ○ 환자의 신체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분석력과 통찰력 ○ 질환별로 프로토콜화 되어 있는 요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활용법 ○ 열선, 초음파장비, 고주파 장비 등 물리치료 장비 활용법 ○ 치료적 마사지, 맨손 치료 등에 관한 지식과 활용법 |
| | |

| | | |
|--------|---|---|
| 응시자격요건 | 관련분야 : 물리치료사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| <p>▶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의한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*로서 공공기관, 병원, 연구기관, 민간기업 등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<p>*필수: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</p> |
| 우대요건 | 해당없음 | |